

의안번호	제 2020 - 13호
의 결 연 월 일	2020. 4. 20. (제10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III. 성범죄,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5
2. 관련 규정	5
3. 공개 방법	6
4. 추진 일정	6
IV.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문조사 보고	7
V.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8
2. 관련 규정	8
3. 의견수렴 계획	8
4. 시행 일정	11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 관련 법관 의견 ·	12
2.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21
가. 여성가족부	21
나.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 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7

다. 국민 의견서(법무법인 송인 변호사 김영미 제출)	36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63
가. 개요	63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	63
다.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	67
4.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70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33차	2020. 4. 6.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 등을 통합한 하나의 범죄군) 명칭 검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II. 전문위원 개입,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2020. 3. 2.자로 김호용 전문위원 해촉(사임)
- 2020. 3. 10.자로 정초아 전문위원 해촉(사임)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2.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1, 2, 3, 4, 5, 6기 양형기준 수정 및 제7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3. 위촉 내역

▣ 신규 위촉

- 백광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2020. 3. 2.자)
- 이형일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군법무관) (2020. 3. 23.자)

4.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0. 4. 20.(월) 14:55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백광균, 이형일 전문위원

5. 전문위원 구성

구분	성명	기수	소속	직위	최초위촉일
법원	손철우	제25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18.02.27.
	최승원	제30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19.02.27.
	백광균	제37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03.02.
검찰	김춘수	제28기	대검찰청 연구관	부장검사	19.08.06.
	유관모	제38기	대검찰청 연구관	검사	20.02.17.
변호사	범현	제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0.08.20.
	김희연	제41기	김희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17.03.07.
	이형일	제14회 군법무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군법무관	20.03.23.
교수/ 전문가	강수진	제24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5.16.
	한상규	제24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5.16.
	김혜경	해당없음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5.05.16.
	최준혁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8.20.
	박성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09.09.

III. 성범죄,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0. 4. 20. 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0. 5. 초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0. 5. 하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IV.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문조사 보고

1. 개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의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재 1심 담당 법관 또는 향후 1심을 담당할 수 있는 법관을 대상으로 이메일 응답 방식으로 설문조사 실시

2. 조사 기간

2020. 3. 4. ~ 2020. 3. 13.

3. 설문조사 문항 및 분석 자료

별첨 「설문조사 문항」, 「설문조사 분석」 과 같음

V.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 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101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양형기준안(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죄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의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담당관
11		국 방 부	법무관리관
12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3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사무국장
14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5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6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7	연구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총무간사
18		한국형사법학회	총무간사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21		한국피해자학회	총무간사
2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총무간사
2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
24	유관기관	대한법무사협회	사무총장
25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26		한국범죄방지재단	사무총장
27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31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3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 성폭력방지팀장
33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3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6	시 민 단 체	참 여 연 대	사범감시센터, 청년참여연대
37		한 국 가 정 법 률 상 담 소	총무부장
38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39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40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사무총장
41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소장
42		한 국 여 성 의 전 화	사무처장
43		한 국 여 성 민 우 회	사무처장
4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무처장
45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사무총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20. 4. 27. ~ 5. 27.

○ 의견조회 취합 : 2020. 5. 28.

※ 의견수렴 결과는 의견수렴 후 해당 안건의 양형위원회 회의 시 보고 예정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설문조사 관련 일부 법관 의견¹⁾

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면적 재검토 요청

최근 대법원 양형조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대법원 양형조사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의하고 있고, 4월 전까지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판사들을 상대로 위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설문내용 별지 참조).

2019년 한국과 영국, 미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공조 수사해 사이트 이용자 310여명을 검거, 이 중 223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크웹 운영자가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한 번 내려받은 사람이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000여 건을 내려받은 사람이 징역 4개월, 70건을 내려받은 사람이 벌금 300만 원, 위 다크웹 운영자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국내외적으로 미온적인 처벌에 대한 비판이 높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드러나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 아래 의견은 2020. 3. 25. 작성자 중 1인의 명의로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 중 형사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등 연구회에 게시되었음. 해당 글을 게시한 법관에게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인지 취지를 분명히 확인하여, 그 원문을 게시함. 다만, 작성자 법관 의사에 따라 실명이 아닌 ‘판사 13명’, ‘판사 12명’으로 게시함. ‘판사 12명’은 모두 ‘판사 13명’에 포함되어 있음

위와 같은 다크웹 사건과 소위 n번방 사건,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해 카오톡 오픈방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서 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유포하는 등의 범죄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합의 하에 성적 영상을 촬영했으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러한 범죄만으로도 성인인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남기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에 대해 협박 등을 통해 신체 부위를 노출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고,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²⁾이고, 이러한 촬영물을 비밀대화방이나 사이트 등을 통해 서로 공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영상을 찍거나 전송한 아동·청소년들은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스스로는 성착취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 촬영물이나 신상 유포 등을 빌미로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고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는 보다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³⁾’의 경우에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2) 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고)

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규정임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는 이러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범죄는 범죄자인 가해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되는 일반적인 음란물과 혼동의 우려가 있고, 위 범죄의 심각성을 폄하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위 처벌규정과 죄명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는 고려가 없고, 아동·청소년을 음란물의 대상으로만 규정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법규정 형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성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이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다양한 범죄(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이용한 협박,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기망 내지 범죄로의 유인)가 현실 공간의 성범죄(성적촬영물을 확보하기 위한 성적 학대와 촬영강요행위)로 이어지고, 다시 이 현실 공간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촬영물의 로딩, 배포, 공유 등)로 이어지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성폭력 범죄보다 결코 가볍지 아니한 범죄이고, 오히려 그 피해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 성적취물 제작·유포·소지 등의 범죄는 각 나라에서 어떤 범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되고 있고, 아동포르노그래피 금지법에서 보듯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중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는 위와 같은 범죄의 복잡한 양상이나 그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고려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이 많았습니다. 설문에서 예로 든 사안이나 그러한 사안을 설명하는 방식, 기준이 되는 형량범위, 가중·감경 사유로 든 사유 등 그 무엇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⁴⁾ 최근 법원 밖에서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만일 이대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혹은 불법촬영죄라고 지칭되는 것과 구별됩니다.

4)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대신합니다.

첫째,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을 다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둘째, 위 설문을 하기 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성폭력 범죄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의 특성이나 복잡·다양한 형태의 범죄 유형을 심도 있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범죄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특성⁵⁾이나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범죄유형이나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사안의 예시나 설명⁶⁾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이나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사유를 예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위 범죄에 관하여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유사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써 마련한 양형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인 요청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법관뿐만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⁷⁾

마지막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전문위원이 사회 일반의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요구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에 있어서 성비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 13명 -

-
- 5)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아동·청소년이 위와 같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경우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성인의 동의와 유사하게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 성인에 대한 폭력·협박의 양상과는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볼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6) 기존의 설문은, 예로 들고 있는 사안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가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착취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고려가 없습니다.
 - 7) 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위 범죄에 관하여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양형기준 관련 설문조사 의 몇 가지 문제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법관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양형기준 설정 보기로 제시된 양형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든 예시는 “14세 여자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가혹행위(성행위를 하도록 만듦)와 그 결과 만들어진 성착취 영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적용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한정함).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접촉 성범죄보다 경하거나 부수적인 형태의 성범죄 또는 단순 음란물 유포 범죄가 아닌,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별개 형태의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성착취 영상과 관련된 것은 통상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현실 공간에서의 성학대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영상물로 제작된 후 디지털 매체를 통해 배포, 확산됩니다. 즉, 현실 공간에서의 성학대 행위 없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디지털 성범죄와 다른 유형이며 더 심각한 가해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예시에서 든 대상은 14세의 아동입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고(아동은 특별한 유인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연상자의 명령에 쉽게 따를 수 있고 매우 가벼운 수준의 유인이나 협박으로도 성착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시에 나온 성학대의 수준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국 사례는 그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과 영리 목적 판매(10년 이하), 배포(7년 이하)의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입법자들도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의 제작/ 판매/ 배포 등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본영역)의 보기로, 제작의 경우 “2년 6개월에서 9년 이상”, 영리 목적 판매 및 배포의 경우 “4개월에서 3년 이상”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기의 범위 자체가 법정형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양형기준이 법정형의 양극단을 포함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아동에 대한 현실공간에서의 성착취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에서의 성착취 영상 제작·판매·배포·확산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위 보기로 제시된 양형의 범위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성범죄에 대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성착취 영상 제작죄와 동일한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기본영역의 양형기준이 13세 이상의 피해자인 경우 5년~8년, 13세 미만의 피해자인 경우 8년~12년입니다. 위와 같은 기존의 양형기준도 법정형 및 죄질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하여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는 피해대상을 신체접촉 성범죄 양형기준과 같이 연령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위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진 제작 범죄에 관해서도, 답변자가 제시된 선택지의 양 극단을 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보다 낮은 양형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로 설문의 보기로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중 제작 범죄의 적절한 양형을 묻는 질문에서 선택지의 범위가 2년 6개월에서 9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응답 결과는 그 중간 정도인 5~6년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6년은 동일한 법정형을 가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기존 양형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제작/ 영리 목적 판매/ 배포/ 소지 단계 사이의 죄질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러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신체접촉 성범죄와는 별개인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란물 제작·유포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가상 공간에서의 성착취 영상 배포에 그치지도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현실 공간에서의 성학대·협박·유인·폭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제작 즉시 가해와 피해발생이 완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즉, 제작 단계, 판매 및 배포 단계, 소지 단계 각 단계마다 새로운 가해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판매 및 배포, 소지로 인한 피해가 제작으로 완성된 범죄에 부수적으로 가볍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소지가 판매 및 배포의 동기가 되고, 판매 및 배포가 제작의 동기가 되는 구조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아무리 법정형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 판매 등 이하부터 양형기준 기본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보기 기준인 “징역 4개월 이하(소지 2월 이하)부터 3년 이상(소지 1년)”은, 제작 단계의 보기 기준인 “징역 2년 6개월부터 9년 이상”과 지나치게 큰 격차가 있습니다 (제작 단계 양형의 보기 기준 조차 그 양형이 너무 적은 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했습니다).

셋째, 특별감경인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의 각 유형별 질문에서 대표적인 특별감경인자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제시되었고, 기타 감경인자에 대한 설문 보기 중에 ‘처벌불원’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승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시의 피해자는 14세의 여아였습니다. 아

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아동·청소년의 처벌불원 의사가 유효한 의사로서 고려되어야 하는지(일반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런 보호자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강요되거나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될 우려가 있는 점 등 포함), 중범죄에 있어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수년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정하는 설문조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대표적인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아동은 취약자로서 연장자의 말에 복종하기 쉽고, 아주 낮은 수준의 유인과 협박에 의해서도 성착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성착취에 있어 승낙이나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노예제에서나 용인될 법한 시각입니다(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의나 승낙은 유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승낙을 유효한 승낙으로 보아 범죄 감경요소의 보기에 올릴 수 있는 것인지도 매우 의문입니다.

나아가 기타 특별감경인자 해당성에 관한 설문조사 보기 항목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음란성(성적 행위의 정도)이 약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이번 설문조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 내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의 제작·판매·유포·소지에 있어 그 피해가 경미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행위의 정도가 약한 상태(?)로 제작되거나 한 명에게만 유포되면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지요. 피해의 확산 등을 가중요소로 설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경미한 피해라는 개념이 성립 가능한지,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불법촬영을 하고 유포하고 소지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 음란성의 정도를 나누어 음란성이 약한 경우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을지 역시 의문입니다. 이 경우도 성학대, 성착취의 정도가 심할 때를

가중인자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음란성의 정도를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은 음란물 유포가 아닌 성학대와 성착취 - 즉, 지배와 폭력이고, 그 피해는 사회적 유포로 인해 새롭게 추가되며 발생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이해하고 반영한 양형기준 마련 및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이 새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판사 12명 -

2.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추진 배경

- '19.10월 다크웹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통 사이트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동시에, △처벌이 국민 법 감정에 보다 합치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19.11월)
 - 양형위의 양형기준 설정(처벌 적정 수위 등)에 관한 관계 단체·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19.12.3.)에 따라, 본 설문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양형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설문조사 추진 현황

- (대상) 총 323개 기관·인사 대상
 -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단체 288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가(학계·법조계) 35명 등
- (응답) 총 응답률 58.5% (응답 수 189개) ※ 신뢰도 95%, 허용오차 ±4.6%p
 -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단체 165개(57.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가(학계·법조계) 24명(68.6%) 등
- (기간) 2019.1.10.~2.4. (1차 ~1.31. / 2차 ~2.4.)
- (내용)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각 범죄별 적정 처벌 수위(징역형), 가중·감경요소

□ 설문조사 결과 보고

-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별 적정 처벌 수위에 대한 응답

※ (참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현행** 법률 및 **개정안**(국회 계류 중) 처벌 규정

죄목	현행	개정안
① 제작 수입 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현행과 같음
② (영리 목적)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 전시 상영	10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징역
③ 배포 제공 / 전시 상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④ 아동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3년 이상 징역	현행과 같음
⑤ 고의 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③,⑤항은 국회 발의된 개정안을 고려하여 **현행 처벌 규정보다 높은 선까지 답변이 가능하도록** 설문을 구성했음을 고려 (③10년 이하까지, ⑤3년 이하까지 답변 可)

○ 평균값

항	구분	계	단체	전문가
①	제작 수입 수출	10.25년	10.54년	8.23년
②	(영리 목적) 판매 대여 배포 제공 / 전시 상영	7.97년	8.10년	7.08년
③	배포 제공 / 전시 상영	8.20년	8.61년	5.42년
④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9.08년	9.52년	6.00년
⑤	고의 소지	2.70년	2.83년	1.83년

* **현행법상 처벌 상한에 따라** 답변한 응답 대상 분석 시, (제3항, 7년 이하 응답 59개) 계 4.73년, 단체 5.19년, 전문가 3.59년 / (제5항, 1년 이하 응답 20개) 계 0.98년, 단체 1.00년, 전문가 0.96년

○ 중앙값

항	구분	계	단체	전문가
①	제작 수입 수출	10년	10년	7년
②	(영리 목적) 판매 대여 배포 제공 / 전시 상영	5.5년	6년	5년
③	배포 제공 / 전시 상영	10년	10년	5년
④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5년	5.5년	5년
⑤	고의 소지	3년	3년	1.25년

* 현행법상 처벌 상한에 따라 답변한 응답 대상 분석 시, (제3항, 7년 이하 응답 59개) 계 5년, 단체 5년, 전문가 3년 / (제5항, 1년 이하 응답 20개) 계 1년, 단체 1년, 전문가 1년

○ 최소값

항	구분	계	단체	전문가
①	제작 수입 수출	5년	5년	5년
②	(영리 목적) 판매 대여 배포 제공 / 전시 상영	3년	3년	3년
③	배포 제공 / 전시 상영	1년	1년	1년
④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3년	3년	3년
⑤	고의 소지	0.5년	1년	0.5년

2) 가중·감경 요소에 대한 응답

가중 요소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성, 강제성, 각종 폭력(성폭력 포함) 수반 시 · 계획적·조직적 범행, 상습적·장기적인 범행 기간 · 보복성 행위 · 아동청소년을 속이거나 협박·회유·유인불공정 계약 등을 통한 제작 범죄 · 피해자의 공박함을 이용한 경우, 사회적 약자 이용(장애인, 가출청소년, 경제적 약자 지위) · 음란물의 내용(가학 행위, 변태성, 근친상간 등 건강한 성 가치 침해하는 내용,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교복 착용 등) · 매체에 따른 배포 파급력(온라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등), 피해자 수 및 연령(13세 미만 등) 등 범행 규모·피해 정도, 2차 피해 발생(영상 외 개인정보 유출 등 식별이 가능한 경우) 여부 · 상업적 수익 의도 및 수익의 범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도록 혹은 어렵도록 조작하였는지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 및 배포 ·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회유·협박(아동청소년 또한 처벌(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 등), 증거 은폐 시도, 반성 미흡 · 피해자가 직접 신고·고소한 경우, 피해자가 범죄 중단을 요구했지만(거부의사) 지속·강행한 경우 ·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 음란물 직접 업로드한 경우, 피해자에게 성 관련 질병 유발 시 등
	<p>행위자 /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까지 범죄에 가담시킨 경우 · 재범 및 동종 전과, 제11조 중 각 호에 따른 범죄 중복 발생 시 · 인적 신뢰관계 혹은 권력관계 이용, 그루밍, 노예화 혹은 교묘한 조종 · 아동청소년 보호의무(혹은 관련 업무) 가진 자의 범행, 군인·교사·경찰·검찰·판사·정치인 등 공직자일 경우 · 피해자의 가족(친족관계 등 양육자), 친구, 친인척, 지인으로서 범행
<p>감경 요소</p>	<p>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강압·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 성폭력 및 기타 폭력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가해 의도가 없는 경우, 개인 소비 용도일 경우, 비영리 목적일 경우 · 영리 목적이 아닌 청소년의 유효한 승낙에 의해 제작한 경우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성인 행세를 한 경우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등장인물은 성인이었던 경우 · 배포·제공이 지인 등 한정적으로 제공되어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부지 중 소지 등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1회성 단순 소지 등 소지 동기
	<p>행위자 /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죄의 자백, 공범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수사 협조 · 자수,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이 없을 경우 · 피해자와 합의·용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 가해자가 아동·청소년, 지적·발달장애인인 경우 · 당사자 간 관계 고려 · 교육 미비·방임 등의 양육 환경 · 16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동의 하 스스로 소지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 성착취물에서의 아동 피해자의 연령 반영 필요

- 특히 13세 미만 피해아동 성착취물 엄벌

△ 현재의 양형기준 보다 엄격히 마련

- 현재 양형기준안의 기본형량은 대체로 최저 법정형량보다 낮은 수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법정형의 최저형량보다 낮은 수준을 기본형량으로 하는 것은 형법 등 각 개별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선고형량을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적정한 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기본형량을 정하고, 이후 감경 또는 가중요소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디지털 성범죄 양형 시 일반 범죄와 달리 해당 범죄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범죄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 촬영물 등은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유포된 경우가 대부분, 이후 불특정 다수가 배포된 촬영물에 접근하여 재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자체를 정확히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유포 부분에서 상당히 엄격한 양형이 필요
-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피해 정도를 명확히 확인할 없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확인된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기에는 과소화될 수 있음을 우려
- 일반적인 양형에 있어 초범 및 상습범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디지털성범죄는 초범의 행위라도 디지털 상에서의 파급력은 차이가 없으며(확산 가능성 상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언제

라도 촬영물 등이 재배포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

△ (2019.12.9.) 양형위원회 정기회의 자료 중 검토 요청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농아자’가 특별양형인자로 위치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요청(지적 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농아자’만이 특별양형인자로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
- 집행유예 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의 일반 참작사유에 ‘사회적 유대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관한 검토 요청(사회적 유대관계란 경제, 정보, 지역사회 위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경우 유대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 또한 최근 상담소에 후원금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통해 형량을 감경하려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나.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 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1) 현황과 문제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음
- 지난 2018년 손모씨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사이트인 ‘웰컴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약 4억 원의 수익을 남김, 그러나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10월, 한국을 비롯한 32개국 기관의 국제공조수사로 회원수만 128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손씨에 대한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아래 청원게시판 참고)

— 답변완료 —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참여인원 : [306,638명]



-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해서는 법정 상한선이 10년인 반면 하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양형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손씨의 경우처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1년 6개월이라는 양형

이 선고될 수 있었음

- 유엔은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리로테자이네로 선언 및 행동강령], [사이버범죄에 대한 협정],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협정] 등을 통하여 개별 국가들이 아동 성착취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관련법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법 강화와 함께 현행법으로도 양형기준을 제대로 만들어 엄중 처벌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동안 양형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법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현실과약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안이함이 작동된 것으로 보임

(2) 양형 관련 주요 의견

(가) 감경사유 인정의 문제

1) 단순 성적 만족, 단순 소지, 유포의 고의성 없음, 영리성 없음의 허구

- 아청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의 규정들은 추가적인 범죄 구성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법리 해석을 오해하고 있음

- 양형의 감경과 가중은 영리목적성의 추가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음란물>의 가학성, 변태성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 받았는데,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고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묻는 글에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VPN(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망)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은 뒤 음란물을 내려 받으면 된다.” 등의 댓글이 달려있음.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아청법 경찰 단속 대비법이나 수사기관 대처요령을 알려주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 많은 방법을 공유함

2) 초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범행 인정, 자백, 합의, 가해자의 연령·직업

- 아동·청소년성착취물⁸⁾ 관련 범죄와 관련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반 형사사범들에 대한 양형에서의 감경 사유를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임. 가해자 대부분은 이전의 전과(동종 범죄, 혹은 다른 범죄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이나 적발이 되면 ‘호기심이나 우발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이 보내준 것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수 많은 변명으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적발이 처음 된 것이지 범죄행위 자체가 처음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

8) 본 의견서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국제용어에 맞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대체함.

의 피해치유와 회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오히려 초범인 점이 감경 사유가 아닌 재범일 경우 가중함이 합당함.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 반성의 진정성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온라인 성범죄로 한번 만들어져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고, 피해자는 평생을 두려움과 공포로 사회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나 자백, 합의를 위한 일시금 지급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용됨
- 초범, 부양가족을 이용하는 사례: 아동 음란물 배포 혐의로 처벌받은 40대 남성 피고인은 심장병 앓는 자녀의 질환 진단서와 아이가 치료받는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아이 치료비를 마련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부에 읍소하였고, 자신의 회사 재직증명서, 사규 징계규정도 함께 첨부함. 초범에 전과 전력이 없었던 피고인은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게 아닌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건 과하다,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아다니는 아동 음란물을 본 것일 뿐, 음란물을 제작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상황에서 아동법의 취지와 세계적 추세에 맞게 대응함이 필요
- 연령이 낮은 가해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등의 정보통신망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젊은 세대의 전문성을 빌어 더욱 악랄한 성착취를 행함. 실제로 다크웹 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텔레그램 내 ‘n번 방’ 운

영자처럼 청소년이거나 청소년을 막 벗어난 성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해자인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 연령을 감형 요소로 적용하는 것을 재고해야 함

- 가해자의 직업을 고려하여 감형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예컨대 가해자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서술은 오히려 성폭력이 그의 일상에 만연하며 이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증이므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함. 덧붙여, 가해자가 아동·청소년과 대면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가중처벌 요소로 적용되어야 함

3) 제작과정에 대한 피해자 동의와 관련하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요건은 기존판례에 따르면 그 행위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힘든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을 본 사람들에게도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함.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인간이 성적대상으로 전락하고 인격권과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및 정보통신매체의 발달과 기술적 진화,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및 유통방식의 다변화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벗방, 유튜브 및 심지어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인하여 마치 스스로, 동의하여 촬영·제작한 것과 같은 양태를 띄고 있음. 또한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제공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기존 판결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접촉하여 피해자를 기망

하거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모델로서의 촬영기회를 주겠다’는 식’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영상을 찍어 가해자에게 전송하도록 하면서 이후 더 수위를 높여나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 다른데 뿌리겠다.’는 협박이 일상화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음란물을 촬영했으므로 감경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대한 법리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무지의 결과임

-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하도록 강요·협박·유인했을 경우 아동·청소년 정보보호법 제11조 1항의 ‘제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경 요소가 아닌 적극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함. 또한 아동·청소년을 그루밍하거나 유인하여 스스로 성적촬영물을 촬영하게 했을 때 감경 요소가 적용된다면, 해당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가 아닌 ‘음탕하고 문란한 청소년’으로 낙인찍혀 ‘순결하지 못한 피해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될 우려도 있음.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뿐 아니라 죄책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스스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면 피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전가되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나) 현행 판결의 가중사유 인정 사실에 대한 의견

1) 가중요소 판단이 일관되지 못함

- 일반적인 가중요소는 전과, 경합범,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량,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의 수와 범행의 반복성, 행위의 가학성, 변태성 등임.

이 중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 수와 범행의 반복성, 행위의 가학

성·변태성은 성범죄의 특별 양형인자임. 그 외 가중요소는 재판부의 개별판단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 정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 결국 재판부의 가치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짐

2) 제작과 관련한 가중요소 판단 미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통해 성적 착취를 경험한 아동은 제작과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일단 그 성적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 인터넷의 특성과 저장기술의 발달로 그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치유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되므로 피해는 예측 어려움
-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은 성범죄자들의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이 다른 피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함
-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일반적인 판례는 유포, 방조 행위, 적극적 차단조치로만 판단하면서 심지어 감경의 사유로 인용되는데, 이는 사이트 운영방식과 수익 창출, 더 높은 수위의 성착취물로 접근하도록 하고자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여성,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성착취물 제작을 부추기고 유인하는 창구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에 준하는 행위 양형으로 판단해야 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계획적이고 지속적 접근을 통한 범행이고, SNS 등을 통한 쉬운 접근, 그루밍 등 신뢰관계를 이용한 성착취 범죄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죄책감과 더불어 본인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기망하여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

하게 함과 동시에 협박, 위협의 수단으로 작동되어 행위의 불법성, 결과의 불법성이 중대하므로 가중요소에 포함되어야 함

3) 연령에 대한 문제 - 13세 이하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제작, 유포 가중요소로

- 현행 아청법 11조의 5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상당수가 처벌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지난 2014~2018년 처분 받은 인원은 총 2146명이다. 이 중 44.8%가 불기소 처분을 받음.

‘13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함.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통칭하므로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연령대로 보이는 아이들의 영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또한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음. 낮은 연령대에 대해서는 가중요소로 연령 구분을 세분화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함.

(3) 의견 결론

- 유엔은 2002년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2008년 [리도데자이네로 선언 및 행동강령], [사이버범죄에 대한 협정],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협정] 등을 통하여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로 개념화하였고 각국도 이에 맞게 국내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 및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다고 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여 더 이상의 성착취물이 재생산되어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재판부의 사회적 정의임

- 부양가족 유무, 초범 등 범죄 전력 여부, 생계나 직업에 대한 남성 중심적, 생계부양자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국제기준과 현행법의 제정목적에 맞도록 양형기준을 새로이 적용함이 시급함
- 관용과 용서가 재범을 방지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의 피해와 수익 창출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더 큰 범죄 및 사람의 인격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다. 국민 의견서(법무법인 송인 변호사 김영미 제출)

국민 의견서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

1. 들어가며

2019. 2.경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 이 중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나타나,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도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발생건수를 보면 2009년 834건(4.8%), 2010년 1,153건(5.6%), 2011년 1,565건(7.1%), 2012년 2,462건(10.5%), 2013년 4,903건(16.9%), 2014년 6,735건(24.1%), 2015년 7,730건(24.9%)¹⁾으로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경에는 5,249건(17.9%)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는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조금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5,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 대검찰청 범죄통계(2016, 2017)

디지털 성범죄의 또 하나의 문제는 범행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촬영의 경우,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거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2019년부터는 피해자에게 협박, 강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 스스로 신체를 촬영하도록 하여 범죄구성요건인 ‘동의’를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포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소라넷 등 음란물사이트,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에 유포하였지만, 운영자와 유포자들의 많은 수가 검거되어 처벌되자 이제는 유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여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를 멈추는 대신에 끊임없이 ‘들키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며 가해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법원의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낮은 신고형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의 신고형과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양형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움에 있어서 국민과의 인식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견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여 기준을 정하는데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개월간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중사유와 감경사유에 대한 그 의견들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 국민의견 수렴 과정 및 경과

가. 국민의견 수렴의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수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2020년 상반기에 해당 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판장과 국민의 인식 차이가 큰 만큼 기존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직접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비교적 최근에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범죄군으로 그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규모가 광범위하며, 그 범죄행위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서 기존의 성폭력범죄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학계와 실무계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국민의견 수집 경위 및 국민의견 수집 방법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하 ‘화난사람들’)은 국민들이 법적 방법 내지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 화난사람들과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송인)는 화난사람들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화난사람들 사이트 내에 “디지털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페이지(이하 ‘국민의견 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국민의견 페이지에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심포지엄과 같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다는 내용 (2) 양형기준의 의미 (3) 양형기준에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의 의미 (4)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국민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사유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난사람들
우리가 힘이 없지 권리가 없내 모여서 권리찾자

2020년 01월 30일 ~ 2020년 03월 31일

디지털성범죄 처벌 국민 의견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에 관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민이 직접 정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Check !

20,023 명
참여인원

국민의견

공유하기

<그림1> 국민의견페이지 초기화면

화난사람들
우리가 힘이 없지 권리가 없내 모여서 권리찾자

양형기준이란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부터 순차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에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설정함에 있어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여성변호사회 등 관련 단체에서 각자의 전문성에 맞춰 다양한 의견을 전

공유하기

<그림2> 양형기준에 대한 설명

화난사람들
우리가 힘이 없지 권리가 없내 모여서 권리찾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도 될까요?

가해자가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감형사유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그 범죄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감경요소”와 “감경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공유하기

<그림3> 국민의견에 참여할 내용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한 후, 참여에 동의한 국민들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직접 기재하였습니다.

- (1) 성명, (2) 생년월일, (3) 휴대전화번호, (4) 참여자 유형 선택(택일) - 일반 국민/피해경험자, (5) 가중사유, (6) 감경사유, (7) 기타의견

화난사람들
우리가 힘이 없지 권리가 없네 모여서 권리찾자

사건정보 입력

사건에 관한 나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성명 *
주식회사 화난사람들

생년월일 *
2022-02-02

휴대전화 *
0

참여자 유형 *
선택해주세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관한 의견 *
디지털성범죄는 아래와 같은 범죄를 말합니다.
○ 불법촬영: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가중사유 *
예시)촬영 및 유포 횟수가 많다, 가슴/성기/성관계/음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촬영했다,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했다, 협박을 해 촬영했다,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했다, 유포 대상이 광범위하다

감경사유 *
예시)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 영상 삭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 동종범행전과가 없다, 소극적으로만 가담했다

기타 의견 *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에 관한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림4> 국민의견 페이지 참여자 기재 화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이 직접 기재한 정보는 화난사람들 서버에 저장되어,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의견 페이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집 경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의견 페이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집은 2020. 1. 30.경부터 2020. 3. 31.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위 페이지를 통해 2020. 1. 30.부터 2020. 3. 18.경까지는 총 1,033명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2020. 3. 19. 텔레그램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피의자 조주빈이 구속되면서 텔레그램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이는 자연스럽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견 페이지에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고, 위 피의자가 구속된 2020. 3. 19.부터 참여자가 급증하여 당초 예정되어 있던 국민의견 수집 마감일인 2020. 3. 31.경까지 13일의 짧은 기간 동안 19,265명이 추가로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견 수집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즉, 2020. 1. 30.부터 2020. 3. 31.까지 62일의 기간 동안 총 20,298명의 국민들이 국민의견 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밝혔습니다. 참여자 1명마다 1장의 의견서가 작성되었으며, 20,298장의 각 의견서를 전부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용지 및 운반의 한계와 효율성을 위해 참여 국민 중 피해경험자의 의견서 245장은 전부 출력하였고(별첨 2. 피해경험자 의견서 245장), 일반국민의 의견서를 포함한 전체의견 20,298장은 국민의견 플랫폼 프로그램에서 정리되어 생성된 참여 국민의 의견을 일괄 정리한 엑셀파일로 대체하였습니다.(별첨3. 가중사유, 4. 감경사유, 5. 기타의견)

참고로, 국민의견 참여 방법은 위 <그림5>까지의 기재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입력 정보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참여하기'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야만 참여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재 내

용을 모두 입력하고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 참여자 수에 포함되지 못한 수가 추가로 6,210명에 이르는데, '참여하기'를 완료하지 못한 의견은 본 의견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3. 양형기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면 그러한 행위 유형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은 점점 진화하고 다양해지는 행위 유형을 전부 포섭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입법으로 해결될 사안이므로 본 의견서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조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소지”

나. 법 적용의 문제점 및 제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동의 유무"를 요건사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수 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 연령은 영

유아부터 8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양형이유에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함이 없이 적용죄명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범죄구성요건에 의한다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포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목적유포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것보다 높은 법정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주는 위법성은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처벌규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가 더 높게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 반드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적어도 관련된 처벌규정이 정비될 때까지는 촬영물의 대상(피해자)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유포한 경우이든,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경우이든 모두 법정형이 높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유포죄로 의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전제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배포에 관한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의 동의 없이 제작되고 유포된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되어야 하며, 기존의 판결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의율할 때보다는 높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4. 국민의견 응답 분석 결과

가. 분석 자료

디지털 성범죄 국민의견을 모으기 위한 안내에서, 위 2.에서와 같이 양형기준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해를 돕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서 고려할만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아래와 같이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가중사유로 고려할만한 내용>

- 촬영 및 유포 횟수
-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슴/성기/성관계/용변 등)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협박수단, 카메라 등을 미리 설치한 경우 등 계획적 범행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 성관계동영상 유포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
- 유포 대상이 광범위

<감경사유로 고려할만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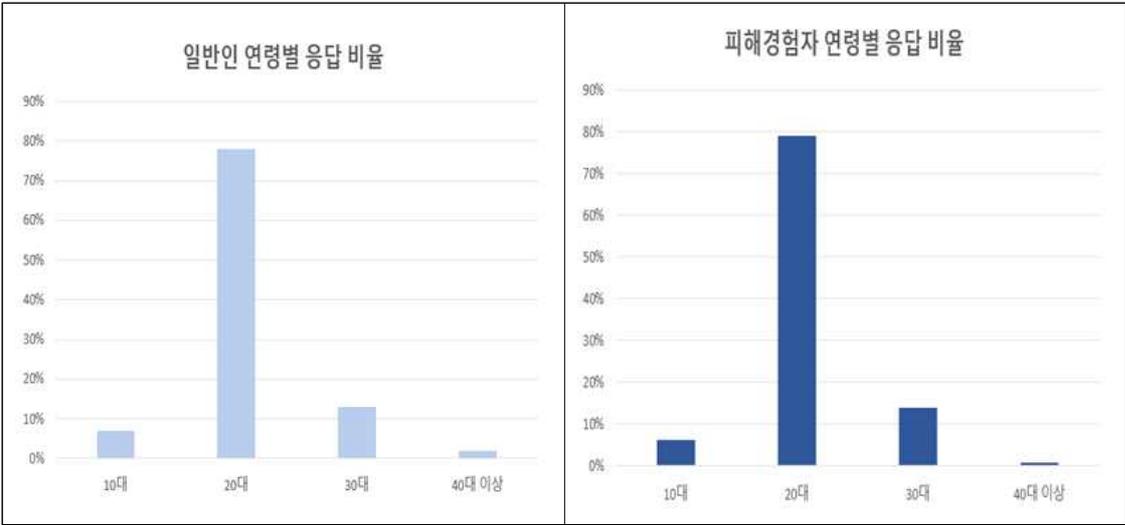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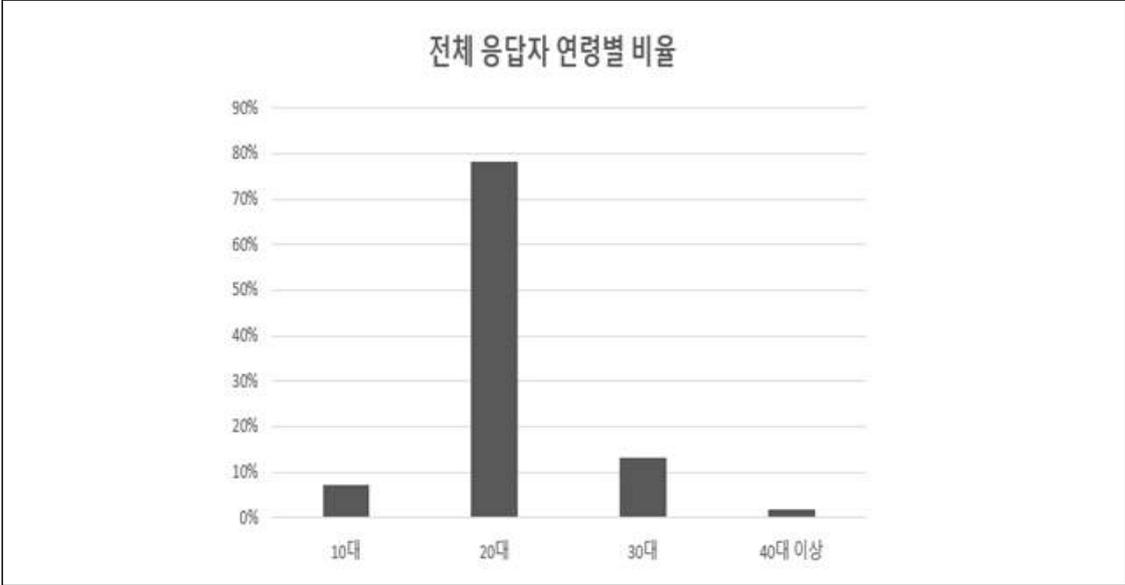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
- 가해자가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

2020.01.30.~2020.03.31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이 내용을 읽고 각자가 생각한 가중/감경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의견에 참여한 20,298명 중 오류를 제외한 20,182명의 의견을 데이터 수집·분석 전문회사인 (주)아르스프락시아에 의뢰하여, 텍스트에 대한 자연어 처리 및 키워드 분석을 통한 텍스트 구조 분석하고, 전체 참여자가 낸 의견을 바탕으로 빈도수 및 네트워크 영향력을 기준으로 추출, 분석하였습니다(별첨 1.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분석).

나. 설문참가자 연령별 응답 비율

분석대상 전체 참가자 20,182명 중 일반국민은 19,940명, 피해경험자는 242명이었습니다. 참여자연령별 응답 비율은 각 항목(전체/일반인/피해경험자) 모두 공통적으로 20대, 30대, 10대, 40대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참여율은 약 80%로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설문 참여시 참여자의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하였기에 참여자 성별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참여자 이름과 설문 내용에서 유추해봤을 때 대부분이 여성 참가자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 가중사유 유형별 분석

(1) 유형 분류

참여자들은 설문 참여에서 예시로 제시한 가중사유 외에도 다양한 가중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응답 유형을 13개 군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에 요약하여 기재된 의견 외에도 가중사유에 대한 참여 국민들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별첨한 엑셀 파일에 전부 기재하

였으며, 적어도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국민의견-가중사유).

① 1번 유형: “행위의 죄질이 나쁜 경우”이며, 구체적인 내용²⁾은 아래와 같은 답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협박을 해 촬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 요구를 한다거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해킹 및 사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협박해 촬영하게 함
경찰이라고 신분을 위조해 신상을 얻고 그 신상을 이용해 협박하여 자위나 자해 영상을 찍게 함
해킹이나 보이스피싱등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영상에 가학적인 요소 포함
정상적이지 않은 변태적 성행위를 촬영 후 유포
전 애인에게 보복하는 행위의 유포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피해 촬영물을 제작하도록 한 경우
일부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였을 때 영상으로 해당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에 칼로 글자를 새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협박을 동반한 범행. 스토킹등 다른 범죄를 동반한 범행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후 촬영했다
피해자가 유포사실을 알고 그만해달라고 했음에도 계속 유포하였다
불법촬영/유포/소비 등의 내용을 숨기기 위하여 혹은 영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비 (예;파일백업) 한 바가 있다

② 2번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장애인, 심신미약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2) 참여자들이 기재한 사유 중 많이 언급된 사유 및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사유를 국민들이 작성한 문구 그대로 해당 유형마다 박스 안에 기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이다
피해자가 음주, 약물중독 등 심신미약일때 촬영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또는 그외 취약 계층인 경우

③ 3번 유형: “유포 규모”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답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유포대상이 광범위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접근가능하게 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를 받는 것이 디지털 성폭력의 가장 큰 무서움이다.
링크 혹은 자료를 sns에 공유한 경우(다수의 사람들이 분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텔레그램,디스코드 등의 신원확인이 어려운 매개를 이용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매체특성상 그 영상을 모두 지우기 힘들다는 점은 매우 큰 가중사유입니다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주변지인들과 공유함(단톡방)
공유 가능한 곳에 업로드 되어 확산이 예상되는 곳에 유포
공유하는 방식 음란물을 공유받기 위한 목적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캡처본,gif 파일 등의 더욱 공유하기 쉬운 형태로 재가공 하여 유포하였다/불법촬영물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
(피해자의) 지인 등 아는 사람에게 유포
재유포가 여러 수단(웹사이트, 메신저, p2p 공유, 물리적 저장매체 전달)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 이뤄졌을수록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유포영상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처벌
단톡방이나 sns 계정, 사이트, 커뮤니티등 다수의 사람이 열람 가능한 곳이 아니더라도 피해 당사자를 포함 타인과의 일대일 대화방에서 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유포가 된 경우
촬영한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볼수록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4번 유형: “피해자 규모, 행위 횟수”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답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촬영 및 유포 횟수가 많은 경우
피해자가 많은 경우
오랜 기간 피해 촬영물을 받아낸 경우
검거 횟수가 아닌 범행 횟수를 형량에 반영해야한다
범죄의 기간 ex) 3회를 5달에 걸쳐 협박한 경우 3회를 1주일에 걸쳐 협박한 경우보다 가중처벌
특정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촬영 및 유포
불법촬영물을 가족 및 지인에게 유포-간접:내연녀 남편이 볼 수 있도록 아파트 우편함에 성관계 관련 사진/비디오를 넣음
확산의 정도가 심해서 온천지에 퍼짐. 한번 퍼지면 완전한 영원한 삭제는 불가능. 성폭력보다 더 심각한 게 평생을 벗어날 수가 없다

⑤ 5번 유형: “동종범죄를 범한 경우”이며, 상습적이고, 전과가 있으며, 동종범죄인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동종범행전과를 적발 기준이 아니라 불법촬영, 유포 횟수를 추적하여 가중하여야 함
상습적 범행인 경우
디지털성범죄/성범죄 등 동종 범죄 신고내역이 있는 경우
동종범행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경우
기타 성범죄 항목에 해당하는 범죄 전과가 있다

⑥ 6번 유형: “피해자 특정 가능여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답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과 피해자의 신상을 함께 공개한 경우(해당 유형 중 일반적 의견)
피해자의 신원이 식별가능하게 촬영한 경우(해당 유형 중 일반적 의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될 수 있게 촬영

피해자의 이름·sns·학교·지역·나이·전화번호·직장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의 신상을 공유
특정 신체부위(점, 배꼽, 흉터)로 피해자 간접적 유추가능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영상이나 사진 안에 피해자의 얼굴만 나오게 장소, 같이 찍힌 사람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지운경우
촬영도중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밝힌 경우

⑦ 7번 유형: “촬영 부위 심각한 경우”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답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
성적인 흥분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가슴, 성기, 엉덩이, 다리, 허리 등)가 나체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된 경우

⑧ 8번 유형: “계획적 범죄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답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미리 약물을 구입하거나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
핸드폰이 아닌 특수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일 경우(고의, 사전에 준비)
인터넷 문의글, 범죄장소에서 머물며 피해자를 물색
단독 범행이 아니라 타인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촬영 유포한 경우

⑨ 9번 유형: “영리목적인 경우”이며,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의 답변을 포함하였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팔아 이득을 취한 경우
유포해서 금전적 이익을 봤다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이익을 창출했다면 더 큰 형벌을 부과해야 함
피해촬영물 상업적 이용을 홍보한 경우, 피해촬영물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유포물을 통한 상업적 행위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를 하고 촬영하여 이 촬영물을 다른 남성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팔
피해자들의 데이터로 금전요구 및 공유 및 판매를 통한 금전행위를 진행

⑩ 10번 유형: “범행 후 정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답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합성이나 썸네일, 캡처 등 2차 제작물을 제작하고 유포
협박 등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어렵게 만듦
유포된 음란물을 이차 가공하여 배포한 경우
판결 전 영상, 사이트, 링크를 삭제하여 증거말소
피해자 본인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 협박죄로 고소 후 보복성으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
피해자가 도움을 찾을 시 보복을 예고
불법촬영물을 개인 클라우드나 usb등에 따로 저장해둔 경우
피해자가 자살, 자해 하거나 그러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경우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봐야한다
피해자가 자해, 자살시도, 일상생활 어려움과 같은 정신과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 상담을 1회 이상 받음

⑪ 11번 유형: “장소의 경우”이며, 촬영 장소가 공공장소, 화장실, 공중 화장실,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등과 같은 답변을 포함하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경우
일상에서 촬영 (길을 걷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 -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문에 붙어있음에도 그 장소에서 불법촬영
여자화장실 혹은 탈의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찍은 경우
고의적인 설치가 의심되는 공간(화장실, 모텔 등) 설정 및 의도(협박, 합성)가

의심되는 불법 촬영

⑫ 12번 유형: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답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사회적 위치 또는 권력 이용(ex.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몰래 찍은 경우/회사 상사가 아랫사람을 찍은 경우)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위력을 가진 사람(예. 보호자/선생님/선배 등)일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등 반인륜적인 근친범죄일 경우
직업적 위계를 이용(경찰관, 아청기관종사자)
배우자/연인/가족/보호자 등 피해자와의 친근한 관계 및 신뢰관계를 이용

⑬ 13번 유형: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이며, 이 유형은 1유형의 행위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해보았습니다.

⑭ 기타 가중사유: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가중사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단순 소장 목적이라도 클라우드 등 타인의 접근 가능한 위치에 저장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 행위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받은 이력이 있다
최초의 영상파일의 녹화 시기가 오래 지났을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뒹야함. 삭제할 수 있었던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악의성이 더 짙기 때문에
거래, 합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협박 촬영하는 경우(가출 청소년 거주지 제공)
돈을 내고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며 소비한 경우
가해자의 직업이 교육, 법관, 공직자 일 경우(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공무원 등)
피의자가 주취상태
범죄 계정 공유해 간접 유포행위
피의자가 불법촬영 장소의 시설물이나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거나 또는

그와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을 범죄에 이용(예시: 숙박업소 직원 및 운영자, 욕실기구/보일러 등 방문 설치기사, 부인과/비뇨기과/ 흉부외과 종사자 등)
모텔, 디비디방 등 숙박/유흥 업소 종사자거나 그 종사자와 가담해 카메라를 미리 설치한 경우
돈을 내고 채팅방에 들어가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영상물플랫폼의 사업자인 경우
범죄 이후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위협
범죄가 일어난 곳이 인터넷이라는 방대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남는 트라우마, 불안감, 공포감 등이 크다. 매체의 특성상 자신의 신상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2) 가중사유 분석 결과

위 세부 유형에 따라 가중사유를 분석하면, 행위의 죄질이 나쁜 경우는 28%,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15.3%, 유포 규모가 큰 경우 10.0%, 피해자 특정 가능하도록 한 경우 9.9%,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 9.2%,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8.5%, 범행 후 정황 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개, %)

유형	개수	비율	요약
1번	3,839	28.1	행위의 죄질이 나쁨
2번	2,095	15.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
3번	1,364	10.0	유포 규모
4번	1,262	9.2	피해자 규모, 행위횟수
5번	40	0.3	동종범죄
6번	1,361	9.9	피해자 특정 가능
7번	315	2.3	촬영 부위 심각
8번	400	2.9	계획적 범죄
9번	430	3.1	영리 목적
10번	840	6.1	범행 후 정황
11번	159	1.2	장소
12번	408	3.0	피해자와의 관계
13번	1,169	8.5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가중사유에 응답한 데이터를 응답자(일반인/피해경험자)별로 분류한 뒤 연령별로 분류하여 집계하면, 응답유형 중에서 1번(행위의 죄질이 나

뽐), 2번(범행에 취약한 피해대상자), 3번(유포규모)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위: 개, %)

분류	유형													총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일반국민	3,746	2,073	1,334	1,242	40	1,333	310	390	423	834	142	397	1,149	13,413
10대	514	321	152	246	4	186	35	56	44	55	27	59	192	1,891
20대	2,736	1,495	1,007	886	35	1,003	255	305	313	634	94	297	852	9,912
30대	409	222	156	92	1	125	19	26	60	136	19	36	92	1,393
40대 이상	87	35	19	18		19	1	3	6	9	2	5	13	217
피해경험자	83	16	25	16		25	4	9	5	5	16	11	19	234
10대	12	1	1	1		4			1		3	1	1	25
20대	58	14	23	15		20	4	7	4	4	12	8	17	186
30대	13	1	1			1		2		1	1	2	1	23
총합계	3,829	2,089	1,359	1,258	40	1,358	314	399	428	839	158	408	1,168	13,647

라. 감경사유 유형별 분석

(1) 유형 분류

참여자들은 설문 참여 안내에서 예시로 제시한 감경사유에 대해 예시 든 감경사유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었지만, 많은 참여 국민들은 ‘감경사유’를 두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경사유에 응답 유형을 8개 군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에 요약하여 기재된 의견 외에도 감경사유에 대한 참여 국민들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별첨한 엑셀 파일에 전부 기재하였으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별첨4 국민의견-감경사유).

① 1번 유형: “자수, 자백한 경우”

자수/자백한 경우
진심 어린 참회의 마음으로 자수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수한 경우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상 및 상세한 범죄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유포한 곳, 거래 역 등 자신의 범죄에 대해 성실히 공개

② 2번 유형: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이며, 합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손해배상
피해자와 합의한 동시에 피해자가 아무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확증과 피해자의 의견이 감경시켜도 된다면 그때
피해자와 대면 사과 (대신 가해자는 눈을 가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모습을 숨기거나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와 충분한 피해보상, 영상 삭제 등을 한 이후 피해자가 합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할 줄 아는 성인이며 합의를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든 대화를 들어보았을 때 정말 협박은 하나도 없고 합의한 것이 확실한 경우

③ 3번 유형: “피해자와 전원 합의한 경우”이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감경사유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피해자 전원 합의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했다.
피해자 전원과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피해자 전원과 비강압적 관계에서 합의했다.
피해자 '전원'이 감경하는 데 동의했다(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경하지 않는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이때 과정에서 강제적이어서는 안 될 것, 가해자 가족의 감정적 호소 금지)

④ 4번 유형: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영상 전부 삭제
영상 삭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 (ex.자신이 유포한 영상을 남이 재유포한 영상 까지 모두 sns와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 할 것. 이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손해는 온전히 가해자 자신이 감당해야함)
본인의 범죄 유포물 전체 자비 삭제
평생토록 해당 범죄 자료 삭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을때만 감경
영상 삭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이때 진지한 노력은 영상 삭제에 들어가는 모든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
해당 영상 최초 배포분 삭제뿐만 아니라 영상이 유통된 경로에 대하여 삭제를 위한 노력을 했다.
영상 삭제를 위해 삭제 금액의 70% 이상을 지원했을 시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악의적 사용 방지 위해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으면 인정x)

⑤ 5번 유형: “수사협조한 경우”이며, 텔레그램 방처럼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하거나, 공범자를 제보한 경우, 내부고발한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가담한 자들의 신상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보하여 추가 범죄자들의 검거에 기여할 경우
같이 영상을 공유한 사람에 대해 제보하고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가담자나 범죄 현장을 제보한 경우
공범의 정보를 제공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움(공범자 신고, 사건자료 넘김 등)

⑥ 6번 유형: “초범인 경우”이며, 초범을 감경사유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수사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처음인지를 초범으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존재하였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
불법촬영물 200장의 사진을 찍은 것이 한 번에 적발되어도 1건이 아니라 200

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초범/계획된 범죄 아닌 경우
동종범행의 전과가 없다.

⑦ 7번 유형: “진지한 반성”

가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고 내부고발 등 개선에 노력을 했다.
본인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반성문을 작성해 본인의 가족, 친지 및 지인에게 배포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가해자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반성 및 사과를 하였다.
단순반성문이 아닌 향후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본인의 성인지교육, 영상삭제를 위한 노력, 성착취 반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Sns 및 유튜브 등 소셜 활동 기록 제출)
법원이 지정한 장소(지면이나 웹사이트)에 반성문 겸 사회적 계도를 하는 글을 올린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하는 공인된 지면과 웹사이트에(없으면 만들어서) 진지한 반성문과 다른 가해자들에게 범죄의 무거움을 알리고 가해를 중지할 것을 권하는 글을 올리면 감경시킨다.
피의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
가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보상, 성범죄 기록 동의 등)

⑧ 8번 유형: “감경사유 없음(반대)”

감경될 수 없습니다. 소비 자체만으로도 감경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피해자 전원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기여도를 따져 감경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소비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전혀 없음. 삭제를 위한 노력을 했든 아니든 이미 다 봤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별별 떨었음
피해자와 합의해도 감경 절대 안 됩니다. 영상 삭제도 감경 받으려는 목적일 뿐

절대 반성이 아님. 감경해주면 동종범행 저지를 것이 확실함, 소극적 방관도 큰 죄 >> 감경 사유 절대 없음
디지털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디지털의 특성상 완벽한 영상 삭제가 어려우므로 감경사유가 있어서는 안 됨
이미 영상은 유포되었고, 영상을 본 모든 이들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사죄와 영상 삭제를 위해 하는 노력 등은 자신이 선택하여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저야 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초범이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초범이어도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감경사유 없습니다. 초범이라 반성하고 있어서 등등 이런 감경 사유들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다든가 앞길에 창창한 청년이라든가 하는 이유로 감경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없음. 성폭력은 특히나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 및 범위를 알기 어려우며 사진/동영상 등이 한 번 유포될 경우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하기 매우 어렵고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음. 그렇기에 어떤 반성을 하거나 합의를 해도 감경 사유 없음.

⑨ 기타 감경사유

피해자 전원의 치료비용 완치 시까지 지불
사건이 종결된 이후 일시적 보상이 아닌, 피해자에게 종신적으로 정기적인 경제적인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을 약속함(매년 확인필요, 불이행시 재산압류, 처벌 진행).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한다.
가해자가 제3자에 의한 협박 및 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죄 가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로부터 받음
재범가능성이 없음
우발적이다.
실수로 들어가게 됐다.
영상을 퍼트리지 않았다.

(2) 감경사유 분석 결과

위 세부 유형에 따라 감경사유를 분석하면, 감경사유 없음 43.6%, 피해자와 합의 32.4%, 자수, 자백 2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경사유에 응답한 8,100명 중 7,906명이 감경사유를 두는 것에 반대하였고, 산정 비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감경사유에 대해 무응답한 국민들은 참여자 중 절반에 이르는 10,893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 국민들 중 92%가 감경사유를 두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 개, %)

유형	개수	비율	요약
1번	3,702	20.4	자수, 자백
2번	5,882	32.4	피해자와 합의(합의, 보상, 사과, 배상)
3번	238	1.3	피해자와의 전원 합의
4번	198	1.1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
5번	104	0.6	수사 협조(공범, 제보, 공범자백)
6번	23	0.1	초범
7번	89	0.5	진지한 반성
8번	7,906	43.6	감경사유 없음(없다, 반대한다)

감경사유에 응답한 데이터를 응답자(일반인/피해경험자)별로 분류한 뒤 연령별로 분류하여 집계하면, 응답유형 중에서 응답유형은 8번(감경사유 없음), 2번(피해자와 합의(합의, 보상, 사과, 배상)), 1번(자수, 자백)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위: 개, %)

분류	유형								총합계
	1	2	3	4	5	6	7	8	
일반국민	87	1,058	26	26	75	14	61	7,835	9,182
10대	7	152	6	5	9	3	12		194
20대	59	781	11	13	61	10	44		979
30대	18	114	7	7	5	1	5		157
40대 이상	3	11	2	1					17
피해경험자		29	2	1		2	2	71	107
10대		4							4
20대		22	2	1		1	2		28
30대		3				1			4
총합계	87	1,087	28	27	75	16	63	7,906	9,289

5. 결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르고, 이 중 미성년 피해자만 1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성착취 영상물들을 찍게 한 후 이를 텔레그램 방에 참여한 수십만 명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국민은 “유포 대상이 광범위하며 유포되는 장소가 인터넷 상이라는 특수함 때문에 이 같은 범죄 영상을 지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유통, 제작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소비 단계의 이용자를 징벌하여 2차 범죄 및 2차 가해 가능성을 낮

취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은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 국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며, 디지털 성범죄를 ‘인격살인’ 행위라고도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가해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어 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평생 고통 속에 지내는 것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은 지금보다는 높고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설문에 참여한 2만여 명이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중사유를 전부 고려하여 가중인자에 포함시켜 주시고, 감경인자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감경사유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헤아려서 감경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진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준 되는 형량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하며, 특히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 영리 목적의 유포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평생 아니 사후까지도 받을 극심한 고통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량범위가 설정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1. 의견서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분석’ 1부, ‘피해경험자 의견서’ 1권(245부), ‘가중사유’ 3권, ‘감경사유’ 2권, ‘기타사유’ 2권 첨부
- 2.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분석』은 별첨과 같음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총 18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3.21.(1)	양형기준 강화 요청
2	2020.3.21.~3.23.(6)	성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3	2020.3.21.~3.23.(7)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4	2020.3.22.(1)	N번방 운영자 와 가입자 및 관련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요구
5	2020.3.22.(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구체적인 법안을 요청
6	2020.3.22.(1)	무기징역 폐지와 정확한 형량 요구
7	2020.3.23.(1)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강화와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공개 요구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귀하께서 요청하는 N번방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양형선고와 관련하여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귀하께서 요청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가중처벌과 그 구체적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N번방 모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0. 4. 7.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136건)

-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3.24.(9)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2	2020.3.26.~4.7.(16)	디지털성범죄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3	2020.3.26.~4.7.(9)	N번방, 텔레그램(SNS 이용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4	2020.3.26.(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문 전면 재검토 요청
5	2020.3.26.~4.7.(3)	N번방 사건 관련 양형에 중형으로 양형할 것을 요구합니다.
6	2020.3.26.(1)	성범죄 양형 판단에 있어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의견이 반영된 양형기준 필요
7	2020.3.26.~4.7.(8)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8	2020.3.26.~4.7.(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형량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정립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인자 중 가중, 감경요소에 관한 의견
9	2020.4.5.(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양형기준 강화 요청
10	2020.4.5.(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형량은 피해자마다 형량을 정해야 함
11	2020.3.26.~4.7.(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중요소에 관한 의견
12	2020.4.5.(1)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에 무거운 형을 내려주십시오
13	2020.3.26.~4.7.(42)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에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14	2020.3.31.(1)	양형인자 중 가해자의 반성, 특정단체의 기부를 양형사유에서 지양 요청
15	2020.3.31.(1)	게시자가 직장동료를 고발하는 사건
16	2020.4.3.(1)	디지털 성범죄 입법 및 양형 강화 요청
17	2020.4.3.(1)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시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

18	2020.4.5.~4.7(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음란물대신 '디지털 성범죄 영상/사진' 혹은 '성착취물'로 제안
19	2020.4.5.(1)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기준 요청하며 여성 판사의 우선 배치를 요구
20	2020.4.5.(1)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 명칭을 디지털 성범죄로 변경 요청
21	2020.4.5.(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음란물대신 '디지털 성범죄 영상/사진' 혹은 '성착취물'로 제안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감경요인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청
22	2020.4.5.(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명칭 수정 제안 및 엄중한 양형기준 정립 요구
23	2020.4.6.(15)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정립과 엄중한 양형기준 요청
24	2020.4.6.(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어야

4.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민원 우편

○ 접수 의견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20.03.09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원구치소에 있는 민원인으로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내 달라는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무면허운전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리행사방해의 범죄 양형기준은 별첨 자료로 보내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양형기준」 및 「2019 양형기준 추록」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